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7일,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기숙사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개정안 제42조제1항)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을 투입¹⁾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²⁾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임. 사립학교 등은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고,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용자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적용됨.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사립대학 내에 사학진흥기금 등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유형을 “행복기숙사(사립)”과 국립대 부지 등에 사학기금을 재원으로 건립한 “행복기숙사(연합)”가 있음.

행복기숙사(사립)은 40개교에 52개의 사업(수용인원 23,043명)이 있고,

-
-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 3. (생략)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이 중 6개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의 용자를 모두 상환했음. 행복기숙사(연합)은 9개 사업(수업인원 7,988명)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복기숙사(사립) 및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39.8억원(연평균 2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2)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의 감면 연장 (안 제42조제2항)

개정안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42조제2항).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3) 평생교육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개정안 제43조제3항)

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제3항의 감면대상은 「평생교육

법」 제28조³⁾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⁴⁾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평생교육단체가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직업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개정안 제44조제1항)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기준 4,663개 기관이 약 1,757만명의 학습자에

3)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20만개를 제공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2.7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5)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개정안 제44조제2항)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

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것임.

전공대학이 평생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와 평생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감면함으로써 전공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4월 기준 전공대학은 3곳이 설치되어 있고, 3곳의 전공대학에서 21,140명의 재학생이 학습을 하고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52.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6)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안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공공직업훈련시설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 근로복지공단)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고용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직업훈련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총 92개가 운영중임. 직업훈련 시설에는 폴리텍대학 40개소(고용부), 교도소·소년원 38개소(법무부),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술교육원 7개소(서울·경기·부산)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해당 시설에서 국민들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7)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47조의4)

개정안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3항의 감면 요건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6)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내진 안전성을 증진하고,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기관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은 생활속에서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민간, 기존·신규시설물을 모두 포함함. 인증 절차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에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서·명판을 취득함.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현황은 357건임. 이 중 업무시설은 124건, 주택 57건, 노유자시설 45건, 의료시설 28건, 교육시설 26건, 기타 87건임.

개정안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축건물 중에서 지진안전 인증건의 수가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12억 9,600만원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별제한법」 제2조의2에서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0.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 74조의2제1항·제3항)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법 제74조의2제1항)⁷⁾, 경감(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가목·나목)⁸⁾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7)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4조의2제1항 :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이하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

8)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4조의2제3항 가목, 나목: 부동산의 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의 75% 또는 50% 감경

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이라는 예상 및 신뢰를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노후 도심 지역에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75조의3제1항)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5조의3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 공급망이 변화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른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은 감면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①위기지역에 위치, ②특정 업종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업종전환 승인)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감면 실적)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10) 지방 이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79조)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⁹⁾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경감 및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 향후 3년 동안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본점 및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받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22.2억원(연평균 6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1) 지방 이전 공장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 제80조)

개정안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면제·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의 분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

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2억원(연평균 3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2)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83조)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개정안을 통해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시장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5항제1호¹⁰⁾에 따라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인 등 감면 방식 및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의 감면 방식 및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개정안을 통해 입점 상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입점 상인이 안정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83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8.2억원(연평균 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13)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85조의2제1항)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46%,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170.4%, 기타공사의 부채비율은 62.5%로 높은 수준이고,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경제적 측면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의 일몰기한은 2025년으로 2025년까지 지방세감면 특례를 운영한 뒤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265억원(연평균 1,0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